

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정복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 335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05년 월 일
발 의 자 : 김 정 복 의원
찬 성 자 : 6인

1. 제안이유

지방공사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, 성과급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·성과급 등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을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도록 함.(안 제8조 제4항, 제4항)
- 나. 사장은 재추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.(안 제8조 제5항)
- 다.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8조 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,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도지사가 계약안을 정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·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⑤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⑥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8조(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 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 8조(사장후보의 추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도지사가 계약안을 정한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·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</p> <p>⑤사장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⑥위원회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<p>(신설)</p>	
<p>(신설)</p>	
<p>(신설)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第49條 (設立)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社(이하 "公社"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<改正 1991.5.31, 1992.12.8>

②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·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.<改正 1992.12.8>

③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福利 및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·사업성 등 地方公企業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檢討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.29>

第58條 (任員)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3.25>

②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經營에 관한 専門적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. 다만,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1999.1.29>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社長을 任命할 때는 社長推薦委員會에서 推薦된 者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.<신설 1999.1.29>

④社長推薦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신설 1999.1.29, 2002.3.25>

⑤이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임면한다. <改正 1992.12.8, 1999.1.29, 2002.3.25>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56조의2 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⑦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6조의3 (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